

#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까>
------	----

제출년월일 : 2002. 11. 26.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사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17587호 2002. 4. 27)되므로써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 나.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안 제4조)
- 다. 당해연도기금사용액의 운용.관리(안 제5조)
- 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 입법예고 : 결과 의견 없음

##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적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제6조를 제8조로, 제5조를 제7조로,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적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3조로,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중전의 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기금의 결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p> <p>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50~70범위에서 재정 형편에 따라 조정)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설 &gt;</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설 &gt;</p> <p>제4조(생략)</p> <p>제5조(생략)</p> <p>제6조(생략)</p> <p>제7조(생략)</p> <p>제8조(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lt; 신설 &gt;</p> <p>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9조(생략)</p> <p>제10조(생략)</p> <p>제11조(생략)</p>	<p>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적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과 당해년도사용기금액(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 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p> <p>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p> <p>제6조(현행과 같음)</p> <p>제7조(현행과 같음)</p> <p>제8조(현행과 같음)</p> <p>제9조(현행과 같음)</p> <p>제10조(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기금의 결산</p> <p>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11조(현행과 같음)</p> <p>제12조(현행과 같음)</p> <p>제13조(현행과 같음)</p>